

'9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

1. 제안이유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①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2. 주요내용

○ 매각처분 승인신청 : 2건, 2필지 156㎡

(재 산 의 표 시)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번호	지 목	소 재 지	신청면적	재 산 가 격 (공 시 지 가)
1	임야	신평동 398-2	142	34,080
2	대	괴정동 433-25	14	13,020

3. 처분근거

-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① 항 및 동조례 38조 2의 ① 항
-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